

노인학대 예방 공익브랜드

나비새김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 110, 129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대상 교육교재



발행처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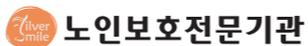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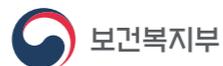
발행인 이기민

편집인 이현민, 이해영, 김재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가길 14, 4층

전화 02-3667-1389 팩스 02-2634-5023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인쇄발행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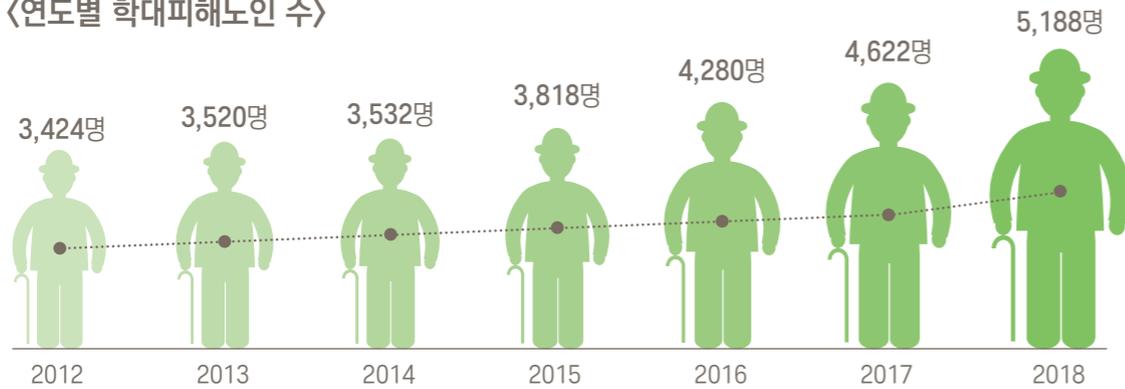


01 노인학대 현황

Q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학대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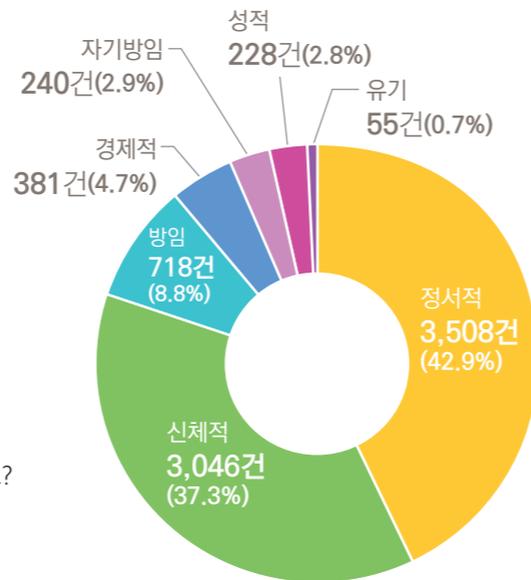
〈연도별 학대피해노인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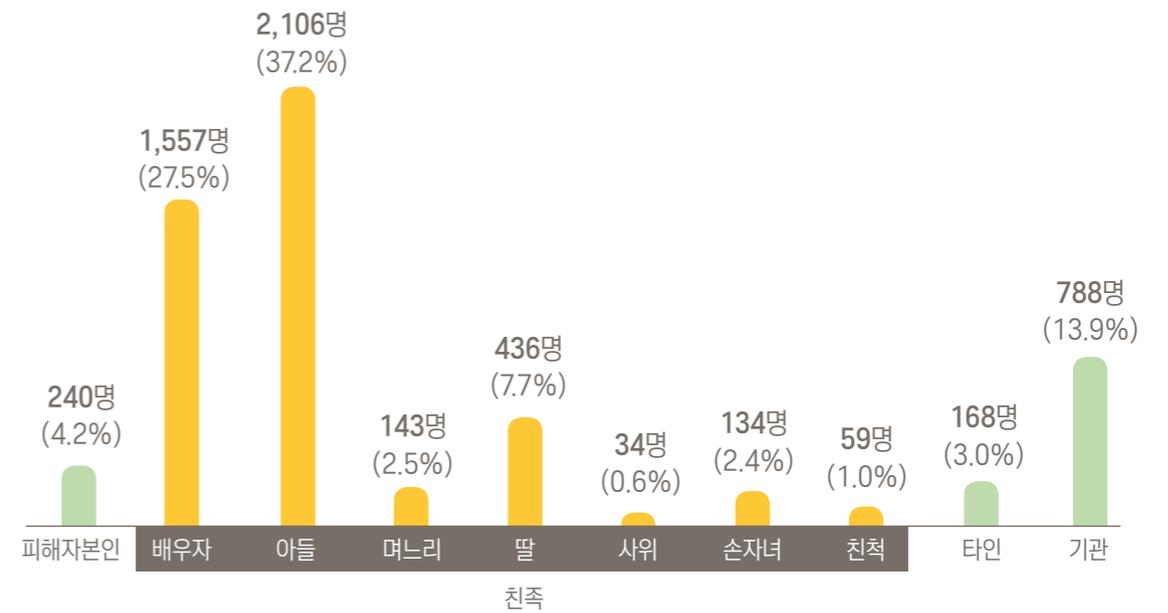
〈노인학대 유형〉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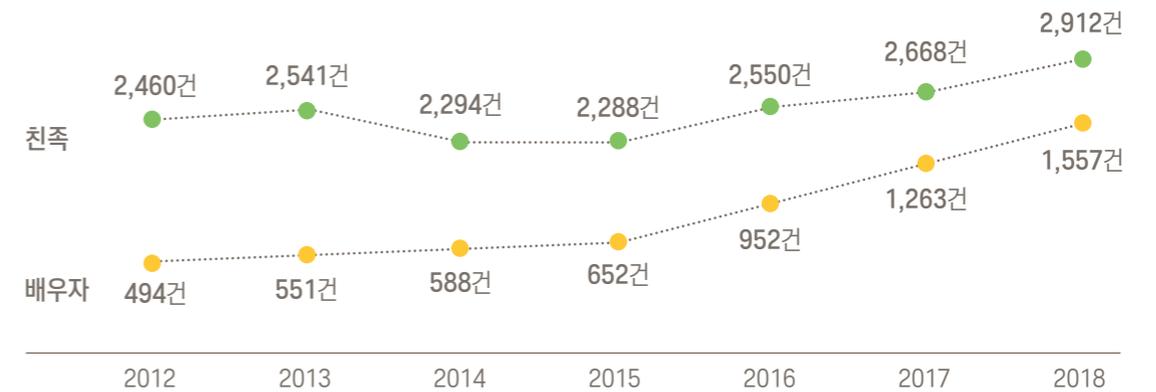
- 오늘 하루, 노인학대가 의심스러웠던 적이 있었나요?
- ‘어쩌다 한 번 일어난 일이겠지...’라는 생각에
모른척 하지는 않았나요?
-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이 노인학대에 해당하지는 않았나요?



〈2018년 노인학대 행위자 유형〉 총 5,665명



〈배우자 및 가족에 의한 학대의 증가 추이〉



※ 해당 데이터의 친족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녀, 친척을 포함함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9). 2018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02 나는 신고의무자



Q 제가 정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인가요?

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Q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만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2호).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노인학대가 오랜기간 반복되고, 점차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의 행동 교정과 원인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로 의심되거나 발견된 경우 꼭 신고해야 합니다.

Q 신분 노출 걱정 때문에 신고가 꺼려지는데...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인복지법에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이를 위반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03 노인학대 알아보기



노인학대의 특성

- ① 지속성 :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행위가 계속됨
- ② 복합성 : 가족 및 관계 내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원인이 존재함
- ③ 반복성 :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하여 발생함
- ④ 은폐성 : 묵인되고 은폐되며, 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그래도 내 자식”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예) 신체 구타·역압·위협, 밀치거나 넘어뜨림, 강제로 가동, 이동을 통제함, 생존유지를 위한 식사·장치·약물 등을 단절함, 약물 및 주사 강제 복용·투입, 강제노동 등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예) 반말, 눈을 맞추지 않음, 욕설 등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성관계 강요 및 시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성폭행,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등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예) 노인의 통장을 동의없이 갈취,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노인의 재산사용을 통제함 등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예) 노인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음, 노인이 끼니를 계속 걸러 야윈 등 (자기방임: 스스로 식사거부, 비위생적인 집안환경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노인의 시설입소 후 보호자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 버림 등

04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 외국인 T씨(40)와 결혼한 한국인 남편 P씨(66)는 퇴직 후 일용직 노동을 나가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몸을 다쳐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였다. 아내 T씨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P씨를 무시하는 욕설과 폭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최근 1년 동안에는 음주 후 P씨를 걷어차거나 집안의 물건들을 던지며 폭력을 가하는 빈도와 강도가 점점 높아졌다.



정서적 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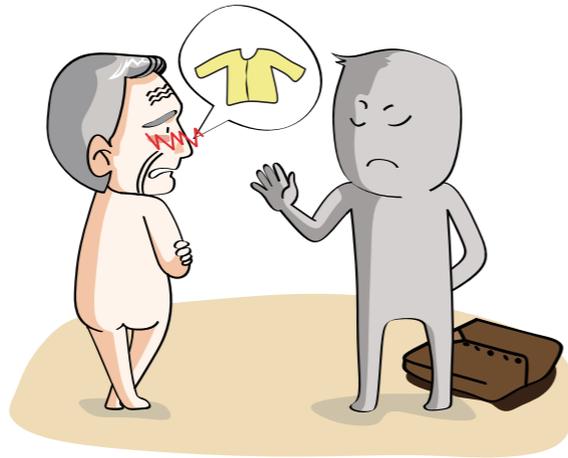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시어머니 C씨(78)는 외국인 며느리 D씨(27)와 아들 P씨(35), 손자 2명과 함께 살고 있다. 아침식사를 하던 중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자 며느리가 아이들을 다그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며 말리던 도중 “너희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말하자, 그 말에 화가 난 며느리 D씨는 시어머니에게 욕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며느리 D씨는 시어머니에게 “당신이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네 아들은 아파서 저러고 있는데 너는 뭐하는 거냐.” “이 집에서 나가라.” “꼴도 보기 싫다.”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점차 시간이 흐르자 귀에 대고 소리 치는 행동,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까지 하였다. C노인은 며느리의 정서적 학대로 인한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고, 인근에 살고 있는 큰딸의 신고로 학대 사례가 접수되었다.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시어머니 C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양로시설 입소를 지원하였다.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가족 문제와 부부갈등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상담을 받았으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결론지었다.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시어머니 H씨(78)는 오랜 기간 치매로 배변을 스스로 할 수 없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침대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며느리 A씨(30)는 더운 여름에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냄새도 독하다며 H씨에게 기저귀 대신 패드를 깔아둔 채 하의 탈의 상태로 방치하였다. 매일 속옷도 입지 않고 배변패드 위에 누워있는 H씨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아무런 대응도 할 수가 없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결혼이민자 B씨(55)는 한국인 남편(70)과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다. B씨의 남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이며 장애수당도 받고 있다. 그러나 B씨 남편의 형제 및 가족들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남편의 재산이나 가계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 결혼이민자 B씨가 가족들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다.”, “남편이 받는 수당이 얼마인지 알려달라.”, “통장을 달라” 등의 요청해도 “그걸 왜 알려고 하느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등으로만 반응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 B씨는 혼자 음식점에서 일하며 월세와 남편 치료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고 있으며, 몸이 아파도 제때에 치료 받지 못하고 참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 결혼이민자 H씨(49)는 한국인 남편 P씨(68)와 재혼하였다. 재혼당시 각자 자녀가 1명씩 있었고, 재혼 후 4명이 함께 지내왔다. 그러나 P씨가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되자, H씨는 이혼을 요구하였고, 자녀들 또한 P씨의 부양을 거부하였다. 아직 이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부인과 자녀들이 1달에 1번 집을 방문하는 등 사실상 방임에 이르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P씨는 몸이 불편하여 활동보조인 등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 대상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상담을 통해 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결혼이민자 P씨(70)는 15년 전 한국인 A씨(사망)와 재혼하였다. P씨는 본국에 전배우자와 낳은 딸이 한명 있으나, A씨와는 자녀를 두지 못하였다. A씨가 몇 해 전 사망하자, P씨는 한국에 혼자 남게 되었고 독거노인이 되었다. 일정한 소득 없이 노령연금과 일용직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으나, 자녀는 P씨의 부양을 거부하며 연락을 끊었다. 최근 P씨는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으나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05 노인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신고 시 어떤 정보가 필요한가요?

학대의심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보라고 생각하며 지나칠 수 있는 사실들이 오히려 사례파악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고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자 관련정보

- 신고자 인적사항 : 이름, 현 거주지, 연락처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 신고자의 욕구 : 노인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학대피해노인 관련정보

- 학대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 안전여부, 긴급분리보호여부, 노인의 심신상태 등
- 학대피해노인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등
- 학대내용

○ 학대행위자 관련정보

- 학대행위자 인적사항 :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직업 등
- 학대피해노인과의 관계 및 동거여부

○ 학대 관련정보

- 학대 발생여부 : 학대유형, 학대정도 및 심각성, 학대발생일시, 학대발생장소, 학대발생빈도, 학대지속기간 등

○ 시설 관련정보*

- 학대내용 : 시설 관리·운영상의 문제인지, 시설 종사자의 문제인지, 시설내 이용자 간의 문제인지, 시설 내 자원봉사자 및 방문자의 문제인지 파악

※ 노인학대가 시설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시설 관련정보도 파악



이러한 정보를 기록하는 이관서를 작성하는 경우, 간결하지만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이관서 작성의 예

〈이관 시 필수 전달내용〉

- 접수일시: 1월 27일 15시
- 상담원 이름: 김수진
- 신고자 이름: 홍길동
- 신고자 전화번호: 010-1234-5678
- 학대피해노인 이름: 홍철수
- 학대피해노인 거주지: 서울시 강남구
- 학대행위자 이름: 이영희
- 접수내용: 신고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아들이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신고함. 학대피해노인은 치매로 인해 새벽에 홀로 집을 나가 길가에 앉아있는 경우도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그러한 학대피해노인을 보며 무능하다, 나가 죽어라 등의 욕설을 하고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때리기도 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 관련법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조치는 취약노인으로서의 보호조치와 범죄피해자로서의 보호조치 의미를 갖습니다.

○ 학대피해노인 보호조치 근거법

- 노인복지법

○ 가정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노인학대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 관련

-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법
-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기타 취약노인으로서의 학대피해노인 지원 관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긴급복지지원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법률구조법

○ 성폭력으로 인한 학대피해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06 노인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안내



사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니는 며느리 A씨는 시어머니인 D씨로부터 받는 부양 스트레스를 토로하였다. 해당 센터 사회복지사는 가족 간의 갈등상황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며느리는 부모부양 및 자녀교육 등의 문화 차이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심각해졌고, 이는 분노감과 폭력행위로 표출 되었음을 알게되었다.

그러나 시어머니인 D씨는 아들과 손자들이 아내 없는 남자, 부모 없는 자식으로 낙인 받는 것이 무서워 며느리의 학대행위를 부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며느리의 신체적 폭력으로 D씨가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담당 사회복지사**는 D씨와 며느리 A씨의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사례를 신고, 이관**하였다. 해당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D씨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해왔음을 확인하고 **노인학대사례로 판정**하였다.

학대 판정 후 아들 S씨는 아내 A씨와 시부모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와 갈등을 없애고,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다. 해당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가족상담 및 학대피해노인과 배우자를 대상으로한 다양한 상담과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사례종결 후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된 생활유지 및 재학대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 34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18개의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건강검진 등의 절차를 거쳐 4개월, 최장 6개월 간 쉼터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단, 치매 등의 질환으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거나, 학대피해노인이 아닌 노숙인의 경우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학대피해노인 쉼터생활 지원, 치유 프로그램 제공,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해 학대 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경우, 쉼터에 입소하지 않더라도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한 지정 양로시설 입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쉼터 보호 후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의 경우 학대 피해노인보호 지정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입소의뢰된 학대피해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양로시설 간 협의를 통해, 입소여부 판정 후 입소가 가능합니다. 양로시설에 입소하더라도, 필요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통해 전문 심리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연계

학대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에게 발생하는 중독 및 신체, 정신질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치료, 방문간호, 의료기관 입원 및 입원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 상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사례 개입 시, 학대피해노인 상담 뿐 아니라 학대 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개입 및 상담을 진행합니다. 학대행위자의 학대유발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제거 하기 위해 상담을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또한 노인학대행위로 상담 및 교육, 심리 치료 등의 권고를 받은 경우, 학대행위자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9조의16(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법률서비스 지원·연계

학대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법률상담연결, 소송지원, 고소고발) 및 가정법률 상담소와 연계 한 이혼절차관련 정보 제공 및 지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시설 내 학대 행위로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 지원 및 관내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혼절차 정보제공(가정법률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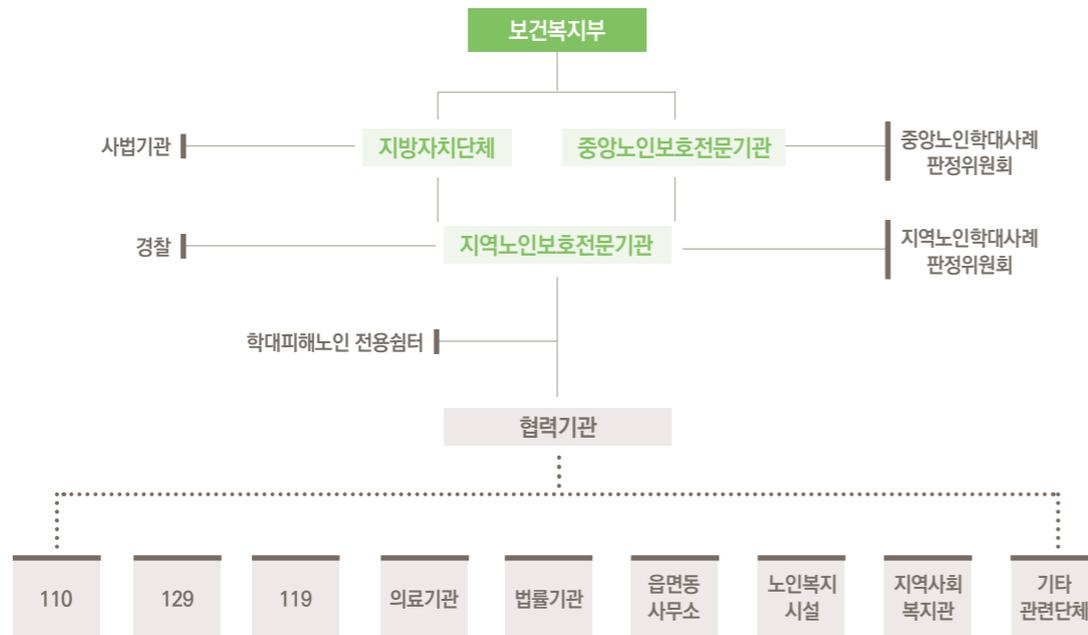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이혼을 원할 때에는 가정법률 상담소 등을 통하여 법적 이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07 노인보호전문기관 소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에 근거하여 전국 시·도에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권의 향상을 위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사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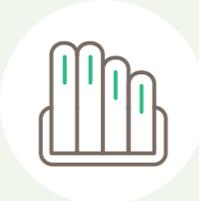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내용



상담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사업

- 전문상담
- 일시보호서비스, 의료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지원 연계



교육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인권 교육



홍보

홍보사업

- 이동상담 실시, 언론홍보
- 학술행사, 캠페인
- 카툰 및 사진전시회
- 노인학대예방의 날(6.15) 기념행사



협력체계구축

협력체계 구축사업

- 중앙·지역노인학대사례 판정위원회 운영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 후원, 자원봉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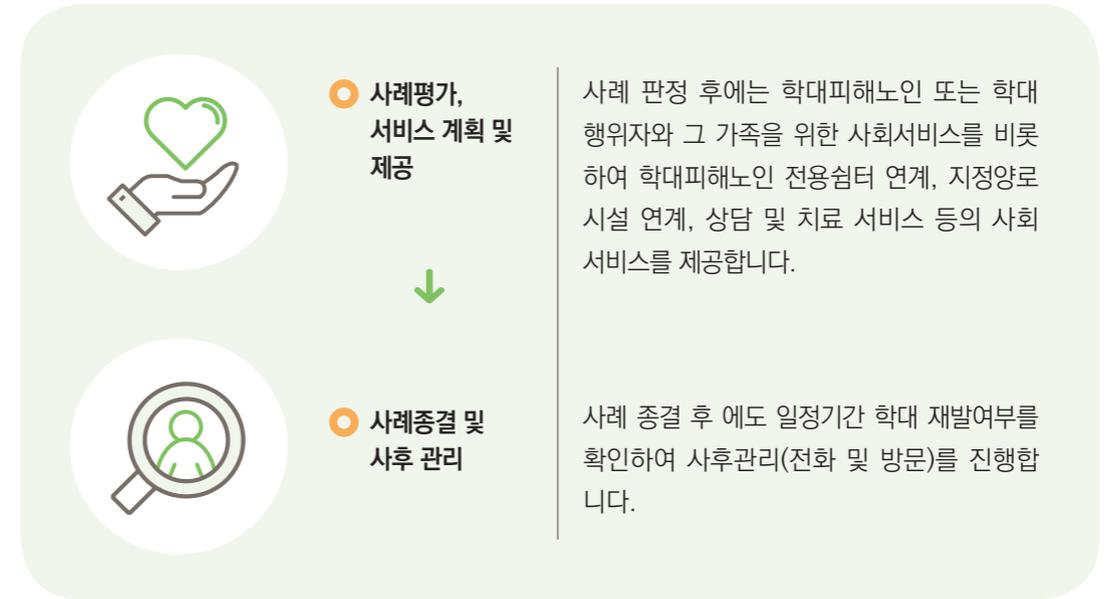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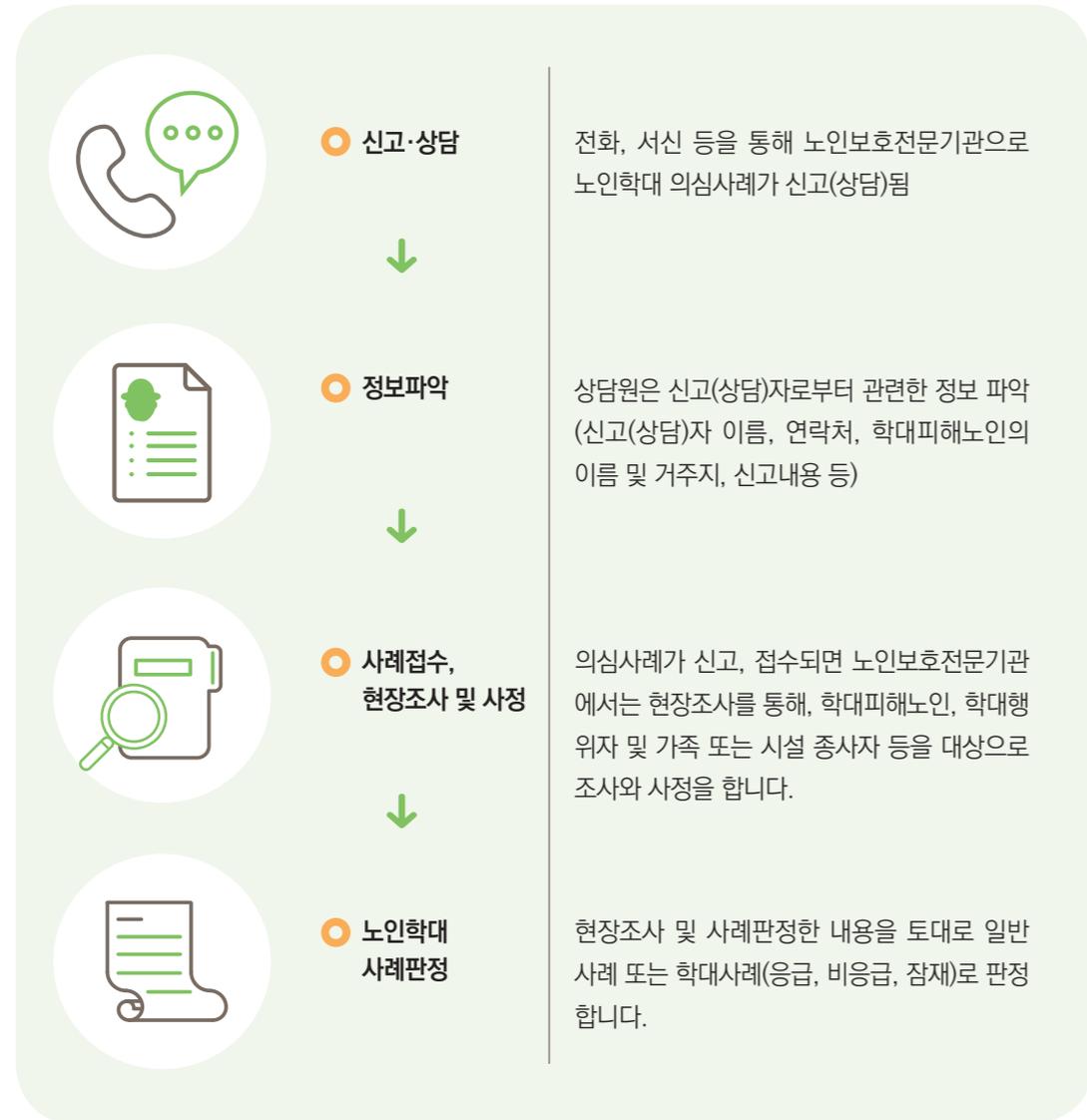


인권보호

노인인권 보호사업

- 노인인식 개선사업
- 효행교육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과정



1577-1389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관할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학대피해노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여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직통번호로 신고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으로 신고하는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됩니다.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할 지역 및 전화번호는 23쪽 참고)

0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소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근거하여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입소기간

4개월 이내(학대재발의 우려 등 재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하여 연간 총 6개월 이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퇴소 후 원가정 복귀 어려운 학대피해노인은
지정된 전국 양로시설로 연계하여 입소 지원

노인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지정 양로시설 등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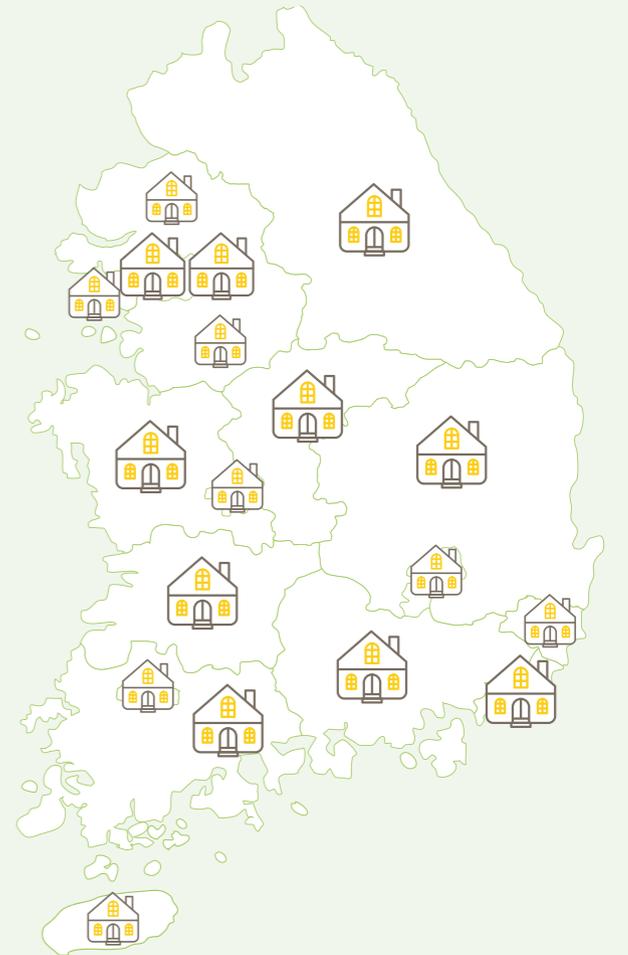
서비스내용

- ①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②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③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④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광역시·도에 1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쉼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 진행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처벌기준



법률	내용	처벌
벌칙 제55조의2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5조의3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신설)	
벌칙 제55조의4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를 방해한 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상해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망 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때	
벌칙 제57조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제57조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노인학대 금지행위 관련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과태료 제61조의2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노인학대 법적 처벌 기준 : 노인복지법 외 타 법률 적용 가능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 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10년까지의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전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



(2019. 10. 기준)

시도	전국기관	관할지역	전화번호
중앙		-	02)3667-1389
서울	서울남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02)3472-1389
	서울북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광진구	02)921-1389
부산	서울서부	종로구, 중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02)3157-6389
	부산동부	중구, 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영도구, 남구, 강서구	051)468-8850
대구	부산서부*	연제구,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부산진구, 기장군	051)867-9119
	대구남부*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053)472-1389
인천	대구북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053)357-1389
	인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032)426-8792
광주	인천서부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32)569-0533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062)655-4155
대전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042)472-1389
	울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052)265-1389
경기	경기남부	성남시(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용인시(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이천시, 광주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여주군, 양평군	031)736-1389
	경기북부*	고양시(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1)821-1461
	경기서부*	안양시(만안구, 동안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시흥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032)683-1389
강원	경기도	수원시(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안산시(상록구, 단원구), 화성시,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268-1389
	강원*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033)253-1389
충북	강원남부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033)655-1389
	충북*	원주시, 태백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033)744-1389
충남	충북북부	청주시, 청원군, 증평군, 진천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043)259-8120
	충남*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043)846-1380
전북	충남남부	천안시(동남구, 서북구), 아산시, 서산시, 연기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041)534-1389
	전북*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041)734-1389
전남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덕진구),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063)273-1389
	전남*	전북서부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경북	전남동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장성군, 장흥군, 화순군	061)742-3071
	전남서부	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영광군, 함평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 나주시	061)281-2391
경남	경북*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진군, 울릉군	054)248-1389
	경북서북부*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예천군, 영양군, 의성군, 봉화군	054)655-1389
제주	경북서남부	구미시, 김천시, 경산시, 성주군, 고령군, 칠곡군, 군위군	054)436-1390
	경남*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창원시(진해구,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성산구, 의창구)	055)222-1389
제주	경남서부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산청군, 거창군, 합천군	055)754-1389
	제주*	제주시	064)757-3400
	서귀포시	서귀포시	064)763-1999

* 표시된 기관에서 센터 운영